

의 안 번호	1461	【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. 8. 9.(목),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8. 8. 10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8. 8. 24.(금)

2. 제안이유

민선7기 출범에 따라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및 동 맞춤형 복지팀, 도시재생 추진 등 국가시책 사업과 지역현안 업무 추진에 따른 인력 증원을 위해 정원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정원의 총수를 “622명” 에서 “638명” 으로 16명 증원, 집행기관의 정원을 “605명” 에서 “621명” 으로 16명 증원
(안 제2조)

나. 직급별 정원책정기준(안 별표 2)

○ 별정직 공무원(신설)

구 분	6급 상당 이상	7급 상당 이하
비 율	50%이내	50%이상

다.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(안 별표 3)

- 1) 총 계 : 622명 → 638명(증 16명)
- 2) 일반직 : 620명 → 635명(증 15명)
 - 5급 : 41명 → 43명(증 2명)
 - 6급 이하 : 573명 → 586명(증 13명)
- 3) 별정직 : 1명 → 2명(증 1명)

4. 근거법규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
나.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

5. 검토의견

본 개정 조례안은 동 복지허브화 사업, 일자리 창출 등 국가시책과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8년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기준 범위 내 필요 인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